

## 학생생활지침

공포 제2025-10호(개정 2026. 1. 6.)

### 제1장 학생증

**제1조(발급 및 반납)** ① 등록을 마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. (개정 2026.1.6.)

② <삭제 2026.1.6.>

**제2조** <삭제 2026.1.6.>

**제3조(휴대)** ① 재학생은 학생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. 개정 2026.1.6.)

② 학생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.

③ <삭제 2026.1.6.>

**제4조** <삭제 2026.1.6.>

### 제2장 단체·행사·게시(간행)물·인쇄물 배포

#### 제1절 교내행사

**제5조(정의)** “교내행사”란 학생단체가 외부 또는 외부인사와 관련 없이 우리대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.

**제6조(집회신청)** 교내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예정 5일 전까지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(지도교수)을 경유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7조(집회공고)** 행사공고는 행사승인을 받은 후 학생지원처의 검인을 받아 공고한다. 다만, 검인이 없는 게시물은 즉시 제거할 수 있다.

#### 제2절 교외행사

**제8조(정의)** “교외행사”란 우리대학교 학생단체가 외부단체 또는 외부인사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.

**제9조(집회신청)** ① 교외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예정 7일 전까지 학생단체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(지도교수)을 경유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교외행사를 신청할 때에는 행사관련 홍보물 및 제반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집회공고)** 행사공고는 행사신청의 절차에 따라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지원처의 검인을 받아 공고물을 게시하여야 하며 검인이 없는 게시물은 즉시 제거할 수 있다.

#### 제3절 게시물

**제11조(정의)** “게시물”이란 우리대학교 학생 및 학생단체가 우리대학교 재학생에게 공지하기 위해 게시하는 교내게시물과 외부인이 우리대학교 학생들에게 게시하는 교외게시물을 말한다. 다만, 우리대학교 학생 및 학생단체가 교외에 공지하기 위하여 게시하는 게시물은 교외게시물로 본다.

**제12조(게시준비)** 학생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게시자의 신분(단체명, 학과, 성명 등)과 게시기간을 명시하여 학생지원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3조(게시장소)** 검인을 받은 게시물은 게시관 등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여야 하며 유리창 또는 건물 내외의 벽면·바닥 등에는 게시할 수 없다.

**제14조(게시기간)** 행사홍보 게시물은 행사 익일까지, 그 외 게시물은 게시일로부터 7일간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게시기간이 경과한 게시물은 게시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게시물 제거)** 게시물의 게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학생지원처의 검인이 없는 것과 지정된 장소 이외에 부착된 게시물 및 게시자의 신분(단체·계열 및 학과·성명 등)을 밝히지 않았거나 허위로 밝힌 게시물의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한다.

**제16조(교외게시물의 게시)** 외부게시물을 학내에 게시하거나 우리 대학교 학생 및 학생단체가 제작한 게시물을 외부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.

#### 제4절 인쇄물

**제17조(정의)** “인쇄물”이란 배포할 목적으로 인쇄, 복사한 일체의 문서를 총칭하며, 우리 대학교 학생 및 학생단체가 교내에 배포하기 위한 교내인쇄물과 교외에서 제작되거나 교외에 배포하기 위한 교외인쇄물을 말한다.

**제18조(제작 및 배포)** 학생 및 학생단체가 인쇄물을 제작,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작 및 배포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운동경기 참가

**제19조(참가)** ① 학생으로서 운동경기 및 경연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 
② 총장의 허가 없이 대외경기에 단체로 응원할 수 없으며 교외에 단체운동 선수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
**제20조(참가제한)** 국제운동경기 이외에는 시험기간 중 대외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참가한다.

### 제4장 각종 행사참여

**제21조(행사참여)**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.

### 제5장 학생자치회비

**제22조(정의 및 운영)** 학생자치회비는 학생이 납부하여 조성된 회비로서, 학생자치기구가 자치활동과 학생 행사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. (개정 2026.1.6.)

**제23조(보칙)**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바

에 따른다.

1.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